

의안번호	2218151
의 퇴 인	전재수의원
회 답 일	2026.8.31.
추계번호	26D1987
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9조제3항 (답례품의 제공)	-지방자치단체의 장은 ①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, ② 「재외동포기본법」에 따른 재외동포가 외화 등으로 기 부를 한 경우로서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상당액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을 답례로 제공할 수 있음 -외화 등의 범위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 로 정함	재량규정
2	안 제9조의2(기 부자에 대한 지 원)	-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, 명 예 주민증 수여 등 지원을 할 수 있음 -공공시설의 범위, 명예 주민증 수여 대상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9조제3항 (답례품의 제공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9조의2(기부자 에 대한 지원)	

2. 상세 사유

- 재외동포 등이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
 추가 제공 등(제9조제3항 등)
 - 개정안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「재외동포기본법」에 따른 재

외동포가 외화로 기부하고, 해당 기부자가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, 세액공제 상당액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, 재외동포 등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지급한도가 늘어나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
-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¹⁾, 개정안과 같이 예외적으로 답례품 한도를 확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
- 또한, 현행법에 따라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「재외동포기본법」에 따른 재외동포²⁾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으나³⁾, 외화 등으로 기부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음

○ 다만, 개정안 시행 이후 재외동포의 외화 기부액 중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산출세액이 없는 기부액 규모를 현 시점에서 추정할 수 없으므로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에 한계가 있음

- 행정안전부에 따르면, 외국국적동포 중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2025년 기부실적은 1,600건, 약 1억 8,000만원 규모임

○ 또한, 개정안은 기부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지원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지원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현 시점에서 추정하기 곤란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1) 현행법 제9조(답례품의 제공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(이하 "답례품"이라 한다)을 제공할 수 있다.

현행법 시행령 제5조(답례품의 한도 및 금지품목)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"란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.

2) 「재외동포기본법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재외동포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가.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

나.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(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을 포함한다)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

3) 단, 「재외동포기본법」 상 재외동포 중 외국국적동포는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만 기부 가능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상욱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상욱	02-6788-4673	flyhigh@assembly.go.kr